

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기업지원과)

제출일 : 2020. 11.

1. 제안이유

- 가.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,
- 나. 기업지원 자문위원회를 기업유치·지원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로 개정하여 기업유치 시 위원회에서 중요사항을 자문·심의·의결토록하며,
- 다. 위원회의 기능에 유치 대상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공모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·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 확보에 기여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명 개정 : 하남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→ 하남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
- 나. 기업유치의 정의 신설 :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
- 다. 시장의 책무 중 기업유치 종합계획 수립 신설
- 라. 위원회 명칭 변경 : 기업지원 자문위원회 → 기업유치·지원위원회
- 마. 위원회의 기능 중 유치 대상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
- 바. 대상기업 선정관련 시 기업유치 대상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 공모를 거쳐 위원회에서 선정, 구체적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함 신설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「하남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고 기존 ‘기업지원’에서 ‘기업지원과 기업유치’로 제도적 근거 및 정책사업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으로 시장에게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기업의 유치·지원의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, 기업유치 대상기업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검토결과, 관련법령 저촉여부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